

보 고 사 항

□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 - '98. 11. 19

(화순군의회 공고 1998-10호)

< 공고내용 >

- 집회일시 : '98. 11. 25 (水) 오전 10 시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각종 의안 발의 현황

○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98. 11. 19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회 기 : '98. 11. 25 (水) ~ 12. 29 (35일간)

○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8. 11. 19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8. 11. 19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주 문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8. 11. 26 ~ 12. 29 (34일간)
- 구성인원 : 7 명

○ 제안이유

- 금번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89,071백만원, 각 특별회계 13,460백만원, 총 102,531백만원 으로서 그 규모가 방대하며
- 예산안은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 주문과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 하는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같이 제안함

○ '9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98. 11. 19 의원발의

○ 발의자 : 문팔갑 의원외 4인

○ 주 문

- '98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다음과같이 보고할것을 요구한다.

보고일시	보 고 대 상	보 고 자
'98. 11. 26 (木) 10:00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해당 실과소장
'98. 11. 27 (金) 10:00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해당 실과소장
'98. 11. 28 (土) 10:00	환경과, 산림과, 농산과	해당 실과소장
'98. 11. 30 (月) 10:00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해당 실과소장

○ 제안이유

- '98년도 군정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점은 시정토록 하는등 '99년도 군정계획 수립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 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함 으로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

○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 법령에 맞도록 조정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운용상의 미비 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보공개 관련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접수기관을 명시하여 준 으로서 접수과정의 혼선 방지 (안 제2조)
- 상위법률과 중복 및 위배된 조례조항 삭제
상위 법률에 세밀하게 명시되어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공개의 정의, 집행 기관의 책무, 공개 대상 정보, 정보의 부분공개, 정보공개의 청구, 정보 공개 결정 및 통지, 정보 공개의 실시,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시행규칙 조항과 법률상 위배 되는 공개 청구권, 운용상황 공표조항 등을 삭제함
- 정보공개심의회 의원수준 현행 9인이내에서 7인 이내로 조정함 (안 제5조)
-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준용하여 조정함 (안 제8조 별표)
- 정보공개관련 법령 제정시행 및 본조례개정에 따라 "화순군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자 함.

(안 제3조 제1항)

-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 담당으로 함. (안 제6조 제1항)

-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까지 군의회에 제출 (안 제7조)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3조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를 "기금 운용 계획은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 제6조 제2항중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 담당으로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쓰레기 봉투의 사양 중 "환경보호과(73-2121)" 를 "환경과(373-2121)"로 함 (안 제8조 제5항)

○ 관련근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업무담당계장" 을 "환경정화 담당"으로 함 (안 제5조)

○ 관련근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중 "수도"를 "상수도"로 함 (안 제1조 제2항)

○ 관련근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98. 1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11. 14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중 "온천개발사업소"를 "환경과"로 함
(안 제11조 제3항, 제15조)

○ 관련근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98. 11. 14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

- '98. 11. 16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CIP)의 완료로 화순군기 및 마스코트 등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군기 모형 변경 (안 제3조)
- 군기를 정기와 약기로 구분 (안 제4조)
- 문장 모형 변경 (안 제7조)
- 휘장 모형 변경 (안 제8조)
- 마스코트 규정 신설 (안 제9조)

※ '98. 11. 16 . 총무위원회 회부

○ '98 추가분 및 '99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 '98. 11. 19 군수제출

○ 제안이유

-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읍면 상수도시설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를 차질없이 상환하기 위함

○ 주요골자

□ '98 추가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채규모	기채선	자금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상환기간	상환제원	
계	2,809						
춘양면 상수도 시설	809	진라남도	지역발급	6.5%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군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환	2,000	"	"	7.5%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실수요자 부담금	농공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

□ '99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채규모	기채선	자금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상환기간	상환제원	
계	8,758						
화순읍하수종말 처리 시설	6,107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9.46%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국고70% 노비15% 군비15%	일반회계
청풍·이양면 상수도 시설	1,558	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6.5%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군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급·배수관 개량	250	환경부	재특자금	9.6%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군비	"
춘양면 상수도 시설	843	환경부	환특자금	3.0%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군비	"

※ '98. 11. 20. 총무위원회 회부

○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8. 11. 16 군수제출

○ 제안이유

-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

○ 주요골자

□ '97 예비비 집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실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 출 액	분 용 액
계 (10건)	538,502	312,642	312,642	312,642	0
일반회계 (10건)	421,613	312,642	312,642	312,642	0
특별회계	116,889	0	0	0	0

※ '98. 11. 17 . 총무위원회 회부

○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8. 11.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

○ 주요골자

□ 예산규모 : 102,531백만원 (일반 89,071, 특별 13,460)

○ 일반회계 : 89,071,219천원

- 세 입
 - 지 방 세 : 8,817,000천원 (9.9%)
 - 세 외 수 입 : 8,265,950천원 (9.3%)
 - 지 방 교 부 세 : 34,671,392천원 (38.9%)
 - 지 방 양 여 금 : 9,965,733천원 (11.2%)
 - 보 조 금 : 21,244,144천원 (23.9%)
 - 지 방 채 : 6,107,000천원 (6.8%)

· 세 출	— 일반 행정비 : 25,488,402천원 (28.6%)
	— 사회 개발비 : 24,183,748천원 (27.2%)
	— 경제 개발비 : 35,918,171천원 (40.3%)
	— 민 방 위 비 : 272,330천원 (0.3%)
	— 지원및기타경비 : 3,208,568천원 (3.6%)
	(예 비 비) : 900,000천원 (1.0%)

○ 특별회계 : 13,459,907천원

- 주 택 사 업 : 157,523천원 (1.2%)
- 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 2,425,846천원 (18.1%)
- 상 수 도 사 업 : 5,882,020천원 (43.7%)
-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 706,582천원 (5.2%)
- 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 270,000천원 (2.0%)
-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 3,332,636천원 (24.8%)
- 주 차 장 사 업 : 685,300천원 (5.1%)

※ '98. 11. 23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8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군수 시정연실 청취)